

# 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 2008.3.10(월) 09:00부터

-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기획재정부

생 산 일	2008.3.10(월)	생 산 부서	법인세제과 조세특례제도과 산업관세과
담당과장	임재현(T: 2150-9150) 장재형(T: 2150-9130) 김종열(T: 2150-9330)	담 당 자	이호섭 사무관(T: 2150-9151) 이인기 사무관(T: 2150-9131) 이경용 사무관(T: 2150-9132) 권기중 사무관(T: 2150-9331)

제목: 2008.3.1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조세관련 설명자료

2008.3.10(월) 대통령께 보고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료  
(7%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, 2008년 실천계획) 중 조세지원과  
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.

## [주요내용]

1.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
2.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
3.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
4. R&D에 대한 지원제도
5.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
6. 네트워크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
7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

기획재정부 대변인

## 1.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(p21)

---

- 법인세율 등을 '08년 6월 임시국회에서 금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으며, 2012년 법인세율도 함께 규정하여 시행

구 분	현 행	구 分	개정 1 ('08 귀속~'11 귀속)	개정 2 ('12 귀속~ )
과표 1억원 초과	25%	과표 2억원 초과	22%	20%
과표 1억원 이하	13%	과표 2억원 이하	11%	10%

※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(10%→8%)도 '08 귀속부터 적용

- (시행) 법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

- 대다수를 차지하는 12월 말 법인의 경우 금년 8월 중간 예납부터 적용 가능

## 2.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(10→8%) [p21]

### □ 최저한세 제도의 내용

- 법인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\* 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

\*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
### □ 개선내용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
- 법인세 낮은 세율 인하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하향 조정

	현 행	개 정
법인세 낮은 세율	13%	11%('08 귀속~'11 귀속) 10%('12 귀속~)
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	1억원 이하	→ 2억원 이하
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	10%	8%

### **3.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\* 인하 (p11)**

---

\* 할당관세 : 물가안정, 수급조절 등을 위해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%p까지 가감할 수 있는 제도

**도입취지** : 곡물, 농축산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, 생필품의 가격안정과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원

**대상품목 및 할당관세율 인하폭** : 관계부처와 협의 · 결정

- 대상품목은 밀 등 가공용 곡물과 농축산업 원자재 중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인상된 품목
- 세율 인하폭은 대상품목의 가격인상폭, 국내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**적용시기** : 4월 중순경 시행

- 시행과 동시에 관세율이 인하 적용됨

## 4. R&D에 대한 지원제도 [p8]

### ① R&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인상

- 기업이 R&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, 직업훈련용 시설,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
  - 공제율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 : 7 → 10%
- 적용시기 : 시행일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# ② R&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범위 확대

- 기업이 연구원 인건비, 기술연구개발 위탁비용, 시약류 구입비 등 R&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
- 공제세액
  - ① 중소기업 =  $\text{Max}\{\text{(1)}, \text{(2)}\}$ 
    - (1) 당해연도 지출액 × 15%
    - (2) (당해연도 지출액 - 직전4년평균 지출액) × 50%
  - ② 대기업 =  $\text{Max}\{\text{(1)}, \text{(2)}\}$ 
    - (1) 당해연도 지출액 × (3% + 매출액 대비 R&D비율% × 0.5, 6%한도)
    - (2) (당해연도 지출액 - 직전4년평균 지출액) × 40%
- 공제대상 추가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)
  -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, 과학기술관련 도서구입비 등
- 적용시기 : 시행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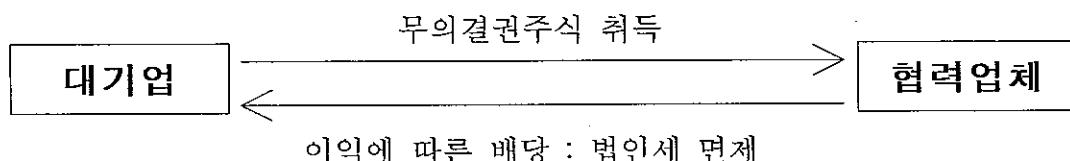
## 5.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[p12]

□ 도입취지 :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고, 동반성장 달성을 지원

□ 제도개선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
-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면제
  - \* 출자비율 30%~ : 배당소득의 30% 법인세 면제
  - 출자비율 30~99% : 배당소득의 50% 법인세 면제
  - 출자비율 100% : 배당소득의 100% 법인세 면제

⇒ 대기업이 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무의결권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전액을 법인세 면제



- \* 상생협력 : 대기업과 중소기업간, 중소기업간,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기술·인력·자금·구매·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동의 활동  
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)

\*\* 무의결권주식 :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식

□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

## 6. 네트워크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(p12)

- 도입취지 :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대한 현금성결제<sup>\*</sup>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금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

\* 현금성결제: 환어음, 판매대금추심의뢰서, 기업구매전용카드,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, 구매론, 네트워크론

- 제도개선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
-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

	현 행	개 정
30일이내 현금성 결제 · 대기업-중소기업 네트워크 론	구매금액의 0.4% 0.3%	→ 0.5% 0.4%
30~60일 현금성 결제	0.15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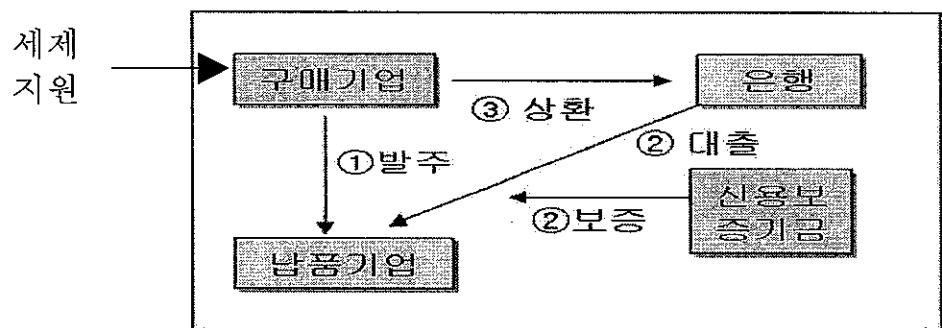
- 적용시기 : 시행일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

### ※ 네트워크론 제도

-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,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

\* 납품완료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전환된 시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발주시점에서 생산자금을 선지원받는다는 점이 특징

<Network Loan제도 운영 방식>



## 7.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[p27]

---

- 도입취지 :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(조세특례제한법 개정)
  - \* 금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해야 하는 의무 부과
- 대상 기업 : 중소기업
- 대상 업종 : 모든 업종(다만, 일부 호화향락업종 제외)
- 공제내용
  - 중소기업이 '07년 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'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정규직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
- 적용시기 : 시행일이후 정규직 전환근로자부터 적용하되 '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